공고 제 3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02월 29일

동탄6동장 (인)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신 *균	신 *균 1986-01-05	경기도 화성시 동탄오산로 (오산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2-29